



: 2020-02-1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7549 부당이득금
원 고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렬, 전완규
피 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3. 인천광역시 연수구
4. 인천광역시 중구
5. 인천광역시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159,004,779원 및 그 중 76,341,506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78,686,0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3,977,226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2016. 10. 20.까지는 별지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고에게 2,231,354,787원 및 그 중 1,057,842,633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173,512,154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각 2016. 10. 20.까지는 별지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478,004,413원 및 그 중 226,822,612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50,386,356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795,445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2016. 10. 20.까지는 별지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주문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223,979,890원 및 그 중 108,075,72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10,404,31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5,499,86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349,530원 및 그 중 1,165,515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184,015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1,210,910원 및 그 중 468,74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742,17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2,586,112,935원 및 그 중 1,214,849,915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371,263,02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인천광역시는 562,730,625원 및 그 중 264,911,965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96,718,69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1,099,97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외 46필지 토지 438,637.2m²(이하 '서구 토지'라 한다), ② 인천 남동구 고잔동 971-1 외 2필지 토지 5,285.8m²(이하 '남동구 토지'라 한다), ③ 인천 연수구 송도동 374 잡종지 2,575.5m²(이하 '연수구 토지'라 한다), ④ 인천 중구 항동7가 1-60 외 263필지 토지 3,566,913m²(이하 '중구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서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도 토지(2011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2012년도 토지(2012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2012년도 토지(2012년도분) 수시과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남동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 토지과세내역(인천 남동구) 및 2012년 토지과세내역(인천 남동구) 기재와 같이,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연수구) 및 2012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연수구) 기재와 같이, ④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중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중구) 및 2012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중구)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일에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과세물건	구분	납부일	재산세	지방교육세	납부세액
2011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토지	정기	2011. 9. 30.	216,151,440	43,230,280	259,381,720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구 토지	정기	2011. 9. 30.	2,331,030	466,200	2,797,230
	인천 연수구청장	연수구 토지	정기	2011. 9. 30.	937,480	187,490	1,124,970
	인천 중구청장	중구 토지	수시	2011. 9. 30.	121,215,340	24,243,070	145,458,410
	인천 중구청장	중구 토지	정기	2011. 9. 30.	2,308,484,490	461,696,890	2,770,181,380
	합계				2,649,119,780	529,823,930	3,178,943,710
2012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토지 중 일부	수시	2012. 10. 16.	10,999,720	2,199,940	13,199,660
	인천 서구청장	서구 토지	정기	2012. 9. 25.	220,808,620	44,161,720	264,970,340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구 토지	정기	2012. 9. 25.	2,368,030	473,600	2,841,630
	인천 연수구청장	연수구 토지	정기	2012. 9. 25.	1,484,340	296,860	1,781,200



: 2020-02-12

년	인천 중구청장	중구 토지	정기	2012. 9. 25.	2,742,526,040	548,505,200	3,291,031,240
	합계				2,978,186,750	595,637,320	3,573,824,070

다. 한편, 원고가 납부한 위 표 기재 각 재산세는 각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에 각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피고 인천광역시에 귀속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소유의 서구 토지, 남동구 토지, 연수구 토지, 중구 토지는 모두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 중구청장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구청장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1) 원고 주장의 서구 토지 중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372-4, 372-5, 372-8, 677, 677-1 6필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 토지 중 가좌동 소재 9필지, 석남동 653-2 토지, 원창동 396-5, 396-6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100 경감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1) 원고 주장의 남동구 토지, 연수구 토지 및 중구 토지 중 일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원고 주장의 토지들은 이미 사업이 시행된 토지로 원고의 사권(私權)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감면신청을 한 바 없어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가 원고 소유 토지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사업 미시행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



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인천광역시 중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구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1) 중구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갑 제6, 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구 토지 중 별지 중구 공공시설 토지 기재 토지(이하 '중구 공공시설 토지'라 한다)가 별지 중구 공공시설 토지 기재 각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에 각 항만, 녹지, 도로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항만, 녹지, 도로를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중구 공공시설 토지를 초과한 나머지 중구 토지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구 공공시설 토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일단,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감경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



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감면신청 요건 불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고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경을 받고자 하였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위 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단서에서 직권면제처리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당해 사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률상 당연히 지방세를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비로소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이미 사업이 시행된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인천광역시 중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원고 주장의 토지들은 이미 사업이 시행된 토지로 원고의 사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11. 대한민국으로부터 중구 공공시설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된 사실도 인정된다.

(3)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중구 공공시설 토지와 같이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애초에 감면대상으로 예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법문에 대하여 다른 명목을 내세운 보정이나, 보충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5) 구 지방세특례법 제84조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법문의 규정상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써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겠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추론할 수 있는 아무런 징표가 없는 바(조항의 제목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토계획법 등의 관련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논리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만 입법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경감을 명시하고 있다).

(6)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 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일부 개정되었는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위와 같은 해석의 원칙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만을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 중 감경하지 아니한 부분이 당연무효인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는 2016. 4. 1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은 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장과 같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위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권익침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를 무효로 함에 따른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많이 저해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천광역시장이 중구 공공시설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정비과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과에 각 비치하였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로서는 중구 공공시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받은 재산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에 2011. 9. 30. 2,115,685,267원, 2012. 9. 25. 2,347,024,308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고에게 2,231,354,787원[= 1,057,842,633원(= 2,115,685,267원 $\times$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73,512,154원(= 2,347,024,308원 $\times$ 1/2)] 및 그 중 1,057,842,633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173,512,154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별지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0. 21.부터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1. 9. 30. 및 2012. 9.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2016. 10. 20.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그 이전인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연 5%의 비율은 앞서 본 위 기간 동안의 각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기간에 대한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4.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서구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구 토지 중 별지 서구 공공시설 토지 기재 토지(이하 '서구 공공시설 토지'라 한다)가 2002. 7.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도시계획시설(항만 : 인천북항)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구 공공시설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항만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한다(원고는 서구 토지 중 경서동 372-3, 372-4, 372-5, 372-8, 677, 677-1 6 필지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 중 감경하지 아니한 부분이 당연무효인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서구 공공시설 토지 중 가좌동 소재 9필지, 석남동 653-2 토지, 원창동 396-5, 396-6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



하여 이미 50/100을 경감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 중 감경하지 아니한 부분이 당연무효인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의 3.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제한특별법 제84조 제2항을 해석하는 경우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 중 감경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받은 재산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2011. 9. 30. 152,683,013원, 2012. 9. 25. 157,372,094원, 2012. 10. 16. 7,954,452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159,004,779원[= 76,341,506원(= 152,683,013원 $\times$ 1/2) + 78,686,047원(= 157,372,094원 $\times$ 1/2) + 3,977,226원(= 7,954,452원 $\times$ 1/2)] 및 그 중 76,341,506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78,686,0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3,977,226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별지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0. 21.부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1. 9. 30., 2012. 9. 25. 및 2012.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인정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5.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 남동구 토지 및 연수구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공시설 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서구가 중구 공공시설 토지 및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점은 앞의 3. 4.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무효인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지방교육세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구 공공시설 토지 및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받은 지방교육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중구 공공시설 토지 및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2011. 9. 30. 453,645,224원(= 423,114,621원 + 30,530,603원)을, 2012. 9. 25. 500,772,713원(=



469,298,291원 + 31,474,422원)을, 2012. 10. 16. 1,590,890원을 각 지방교육세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원고에게 478,004,413원[= 226,822,612원(= 453,645,224원 $\times$ 1/2) + 250,386,356원(= 500,772,713원 $\times$ 1/2) + 795,445원(= 1,590,890원 $\times$ 1/2)] 및 그 중 226,822,612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50,386,356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795,445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별지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0. 21.부터 피고 인천광역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1. 9. 30., 2012. 9. 25. 및 2012.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인정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2020-02-12

재판장 판사 서중석

판사 장혜정

판사 최유빈



: 2020-02-12

관련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1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8조(감면신청 등)

-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2020-02-12

서구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순번	주소	본번	부번	재산세액(원)	지방교육세(원)
1	석남동	639	-	86,083	17,217
2	석남동	640	-	10,968,132	2,193,626
3	석남동	644	-	2,223,838	444,768
4	석남동	645	-	18,275	3,655
5	석남동	646	-	3,757	751
6	석남동	652	-	700	140
7	석남동	653	-	29,445	5,889
8	석남동	653	2	3,706,971	741,394
9	석남동	653	3	4,139,327	827,865
10	원창동	396	-	15,450,990	3,090,198
11	원창동	396	3	19,197,513	3,839,503
12	원창동	396	5	9,909,644	1,981,929
				2,469,369	493,874
13	원창동	396	6	10,120,574	2,024,115
14	원창동	396	7	19,253,468	3,850,694
15	원창동	396	9	3,890,180	778,036
16	원창동	396	10	8,782,826	1,756,565
17	원창동	396	12	16,130,260	3,226,052
18	원창동	396	13	9,984,278	1,996,856
19	원창동	396	14	835,746	167,149
20	원창동	396	16	3,135,450	627,090
21	원창동	396	17	3,648,358	729,672
22	원창동	397	-	151,926	30,385
23	원창동	397	1	467,546	93,509
24	원창동	397	3	242,852	48,570
25	원창동	397	4	90,079	18,016
26	원창동	397	5	161,542	32,308
27	원창동	397	7	14,728	2,946
28	원창동	397	8	71,753	14,351
29	원창동	397	10	127,246	25,449
30	원창동	397	15	25,346	5,069
31	원창동	397	16	30,060	6,012
32	가좌동	593	-	1,964	393
33	가좌동	594	-	21,922	4,384
34	가좌동	595	-	1,566,777	313,355
35	가좌동	595	1	2,108,946	421,789
36	가좌동	595	2	1,284,702	256,940
37	가좌동	595	4	283,533	56,707
38	가좌동	595	5	136,144	21,229
39	가좌동	595	6	1,078,743	215,749
40	가좌동	595	7	832,020	166,404
합계				152,683,013	30,530,603



2012. 9. 25. 납부내역

순번	주소	본번	부번	재산세액(원)	지방교육세(원)
1	석남동	639	-	93,139	18,628
2	석남동	640	-	11,857,440	2,371,488
3	석남동	644	-	2,408,134	481,627
4	석남동	645	-	19,773	3,955
5	석남동	646	-	4,065	813
6	석남동	652	-	757	151
7	석남동	653	-	31,859	6,372
8	석남동	653	2	4,008,701	801,740
9	석남동	653	3	4,476,249	895,250
10	원창동	396	-	16,708,020	3,341,604
11	원창동	396	3	20,806,243	4,161,249
12	원창동	396	5	10,751,608	2,150,322
				2,675,743	535,149
13	원창동	396	6	10,966,385	2,193,277
14	원창동	396	7	20,862,548	4,172,510
15	원창동	396	9	4,205,600	841,120
16	원창동	396	10	9,516,838	1,903,368
17	원창동	396	12	17,478,322	3,495,664
18	원창동	396	13	10,784,206	2,156,841
19	원창동	396	14	902,705	180,541
20	원창동	396	16	3,397,490	679,498
21	원창동	396	17	3,953,264	790,653
22	원창동	397	-	164,379	32,876
23	원창동	397	1	505,456	101,091
24	원창동	397	3	262,741	52,548
25	원창동	397	4	97,463	19,493
26	원창동	397	5	174,783	34,957
27	원창동	397	7	15,449	3,090
28	원창동	397	8	77,634	15,527
29	원창동	397	10	137,676	27,535
30	원창동	397	15	27,424	5,485
합계				157,372,094	31,474,422

2012. 10. 16. 납부내역

순번	주소	본번	부번	재산세액(원)	지방교육세(원)
1	원창동	397	16	32,524	6,505
2	가좌동	593	-	2,125	425
3	가좌동	594	-	23,719	4,744
4	가좌동	595	-	1,697,718	339,544
5	가좌동	595	1	2,281,947	456,389
6	가좌동	595	2	1,390,088	278,018
7	가좌동	595	4	307,410	61,482
8	가좌동	595	5	147,312	29,462
9	가좌동	595	6	1,168,897	233,779
10	가좌동	595	7	902,712	180,542
합계				7,954,452	1,590,890



: 2020-02-12

[환급가산금 이율]

적용시기	이자율	비고
2011. 4. 11. ~ 2012. 2. 29.	3.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부칙2조 (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2. 3. 1. ~ 2013. 2. 28.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3조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3. 3. 1. ~ 2014. 3. 13.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2조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4. 3. 14. ~ 2015. 3. 5.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3조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5. 3. 6. ~ 2016. 3. 6.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2조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6. 3. 7. ~ 2017. 3. 14.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2조 (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7. 3. 15. ~ 현재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2조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